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한	비고
윤○정	2005. 10. 1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6	2023. 10. 31.	

2. 공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25.

3.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발급안내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인이 직접 제출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 가능
- 발급신청서와 6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는 상반신 사진 1장(3.5cm×4.5cm)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 받고자하는 경우는 사진 1장 추가)

5. 유의사항

- 상기 표시된 기간이 지나 신청하실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학, 해외여행, 입원, 수감 등의 사유로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엔,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324-6882 담당자: 오금영)

2023년 10월 10일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장

